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4월 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4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4. 17) 상정
-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4. 17)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김 영 국)

가.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지방세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적재공간이 2제곱미터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에 포함 하도록 정함.(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분리과세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 감면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및 제21조)
-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토지·지상건축물 및 주택으로 구분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16조제2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조례 개정과 관련 주요 근거와 사유는 ?	○ 상위 관련 법령의 개정과 경기도로부터 지방세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며, 기존 조례에 근거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등을 보완코자 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98호
의결 년월일	2006. 4. 19. (제126회)

제출년월일 : 2006. 4. 5.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지방세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도세정과-18872(2005.12.7), 도세정과-3783(2006.3.8)]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적재공간이 2제곱미터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정함.(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 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

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 감면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및 제21조)

라.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토지·지상건축물 및 주택으로 구분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16조제2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각각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1호 및 동조 제2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본문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지상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21조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를 “창고용에”로 한다.

제23조제1호중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를 “동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p>공사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u>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 ----- ----- -----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 -----</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p>

현행	개정안
<p>2. ~ 4. (생략)</p>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 4. (생략)</p>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p>	<p><u>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u></p> <p><u>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③---<u>각 호의 어느 하나</u>-----</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p> <p>-----</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p>2. ~ 4. (생략)</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 4. (생략)</p> <p><신설></p>	<p><u>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u></p> <p>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u>각 호의 어느 하나</u>-----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u></p> <p><u>「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u></p>

현행	개정안
<p>세 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3. (생략)</p>	<p>----- ----- ----- ----- -----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 ----- ----- -----.</p> <p>1. -----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 ----- ----- ----- ----- ----- ----- -----.</p> <p>2·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u>토지 및 지상 건축물</u> (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p>	<p>----- ----- ----- ----- -----<u>토지·지상건축물 및 주택</u>----- ----- ----- ----- ----- ----- ----- -----.</p>
<p>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u>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u>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 -----<u>창고용에</u>----- ----- ----- ----- ----- ----- -----.</p>
<p>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p>	<p>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 ----- ----- -----</p>

현행	개정안
<p>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p> <p>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동조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p> <p>2. ~ 4. (생략)</p>	<p>----- ----- ----- ----- -----.</p> <p>1. ----- ----- ----- ----- ----- ----- ----- ----- ----- ----- ----- -----동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 ----- ----- -----.</p> <p>2. ~ 4. (현행과 같음)</p>